



- ○○○○산업단지 ○○○교환토지 보상관련 - 내부연루자 1심재판 결과 및 처분계획 보고



○○○○산업단지 ○·○○○ 교환토지 보상시 우리공사 직원이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1심재판 결과(3년형) 및 처분계획입니다.

☐ 범죄사실(요약)

- ○○○○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환대상 토지를 임의 선정 후 사문서 위조 및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공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를 함

III. 처분계획

☐ 처분요구 계획(안)

- 「인사규정」 제43조(징계) 및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 제56조(징계양정기준) 별표9에 따라 성실의무를 위반(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) 을 적용하여 징계(파면) 처분 요구